

부천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: 106

제출년월일 : 1992. . .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현행 통반중 도로의 개설등으로 생활권이 일치 되지 않거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에 불편을 주는 지역과,
- 아파트등 신규 공동 주택의 신축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통·반 규모가 너무 비대하여 주민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지역
(심곡1동, 춘의동, 성곡동)

- 기존 주택 단지에 새로운 아파트 신축등으로 주민 상호간에 이해 관계 상반으로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통·반에 대하여
- 지역 주민 상호간 유대감 증대와 지역 사회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보다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에 알맞는 통·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

□ 주요골자

구분 동별		현행		개정		증감		비고
구별		통 수	반 수	통 수	반 수	통 수	반 수	
총 계		732	4,731	792	5,017	60	286	
소 계		317	2,380	341	2,487	24	107	
남	심곡본동	19	153	21	162	2	9	
	심곡1동	20	132	22	137	2	5	
	소사1동	18	125	18	125			
	소사2동	20	157	20	157			
	소사3동	26	195	26	195			
	범박동	15	104	15	104			
	역곡1동	22	173	23	171	1	△ 2	
	역곡2동	24	185	26	193	2	8	
	역곡3동	36	261	36	261			
	괴안동	33	274	35	288	2	14	
	중동	29	190	29	208		18	
	송내1동	20	155	23	172	3	17	
구	송내2동	21	182	24	189	3	7	
	상동	14	94	23	125	9	31	
소 계		415	2,351	451	2,530	36	179	
중	심곡2동	23	140	23	142		2	
	심곡3동	17	110	17	110			
	구심곡진동	20	114	20	114			

구별	구분 동별	현행		개정		증감		비고
		통수	반수	통수	반수	통수	반수	
중 구	원미 1 동	23	144	23	144			
	원미 2 동	22	143	22	143			
	춘의 동	28	152	35	177	7	25	
	성곡 동	40	178	49	246	9	68	
	원종 1 동	27	158	34	191	7	33	
	원종 2 동	26	154	27	158	1	4	
	고강본 동	33	194	33	194			
	고강 1 동	22	130	22	130			
	오정 동	31	160	32	166	1	6	
	도당 동	32	197	40	225	8	28	
	신흥 1 동	35	195	35	195			
	신흥 2 동	36	182	39	195	3	13	

부천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(명칭 및 관할구역) 별표중 “구 관할 동
별 통·반현황”과 “동별 통·반 관할 구역”
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1992. . .부터 시행한다.

(통·반관할구역: 별도보관)

【별 지】

구 관할 동별 통·반 현황

구분		통수	반수	비고
구별	동별			
총 계		792	5,017	
소 계		341	2,487	
남구	심곡본동	21	162	
	심곡1동	22	137	
	소사1동	18	125	
	소사2동	20	157	
	소사3동	26	195	
	범박동	15	104	
	역곡1동	23	171	
	역곡2동	26	193	

구분		동별	통 수	반 수	비 고
구별					
남 구		역 곡 3 동	36	261	
		괴 안 동	35	288	
		중 동	29	208	
		송 내 1 동	23	172	
		송 내 2 동	24	189	
		상 동	23	125	
소 계			451	2,530	
중 구		심 곡 2 동	23	142	
		소 사 3 동	17	110	
		심 곡 진 동	20	114	
		원 미 1 동	23	144	
		원 미 2 동	22	143	
		춘 의 동	35	177	
		성 곡 동	49	246	
		원 중 1 동	34	191	
		원 중 2 동	27	158	
		고 강 본 동	33	194	
		고 강 1 동	22	130	
		오 정 동	32	166	
		도 당 동	40	225	
		신 흥 1 동	35	195	
		신 흥 2 동	39	195	

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(안)

의안번호 : 107

제안년월일 : 1992. 8.

제안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내부부 세제22670-206('92. 7. 8)호 및 경기세정 22670-1220('92. 7. 13)호에 의거 조례 준칙 시달
-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키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근거법규 : 지방세법 제7조
- 면제대상 : 종교단체(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)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.
- 면제세목 :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, 사업소세